

■ 주소정보시설규칙 [별표 20]

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(제29조제2항 관련)

1. 대형 안내판



2. 중형 안내판



3. 소형 안내판



비고: 대형·중형·소형 안내판의 내용 중 “주요건물”은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.